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3 선고 2024가단887 판결 [건물명도 등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13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‘별지목록 및 도면 표시’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3. 10. 3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,  
나. ‘별지 도면표시’ 기재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

1)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에는 인도할 부동산이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’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나, 청구원인과 임대차계약서에비추어 볼 때 ‘별지목록 및 도면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’, 즉 건물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택한다.